

2020학년도 졸업생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사항 안내

① 원서 접수 업무 처리 절차

- 접수기간 : **2019. 8. 22(목) ~ 9. 6(금) 09:00~17:00** / 12일간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접수자 : **본인 접수를 원칙**으로 하되 예외* 인정
 - * 졸업자(검정고시 등 포함) 중 장애인, 수험자, 군 복무자, 입원 환자 등은 대리접수 가능
- 준비물 : **신분증, 사진2장, 응시 수수료**

** 신분증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기간만료 전 여권,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),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/생년월일/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

** 여권용 규격 사진(가로 3.5cm × 세로 4.5cm) 2매

-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 (가로 3.5cm × 세로 4.5cm)으로,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cm~3.6cm이어야 함.
 - ※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.
 - ※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
 - ※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, 테두리가 없어야 함.

** 응시수수료 안내(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)

선택 영역 수	4개 영역 이하	5개 영역	6개 영역
응시수수료(원)	37,000	42,000	47,000

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

-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
 -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

구분	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법정차상위계층	○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○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	○ 차활근로자 확인서
	○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대상자 증명서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○ 차상위계층 확인서
	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19.7.22.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

② 접수 시 유의사항

- 원서 접수 시 기재 내용 확인 철저
 - 응시원서 기초자료에 작성한 사항(선택과목 등)을 응시원서 접수시스템 입력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지원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 등 원서 접수 주요 절차[참고1]를 반드시 준수

★ **응시 원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사례가 매년 발생하므로 지원자 및 접수자의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바람**

-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 안내 및 업무 처리 철저
 -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한 필요서류, 처리 절차에 대한 충실한 안내로 접수 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주의[참고2]
- 원서 접수시스템 사전 점검과 교육으로 원활한 접수 처리 실시
 -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접수 기간 내 접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
 - 원서접수 절차,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담당교원이 학교 단위 또는 일부 학생의 원서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[참고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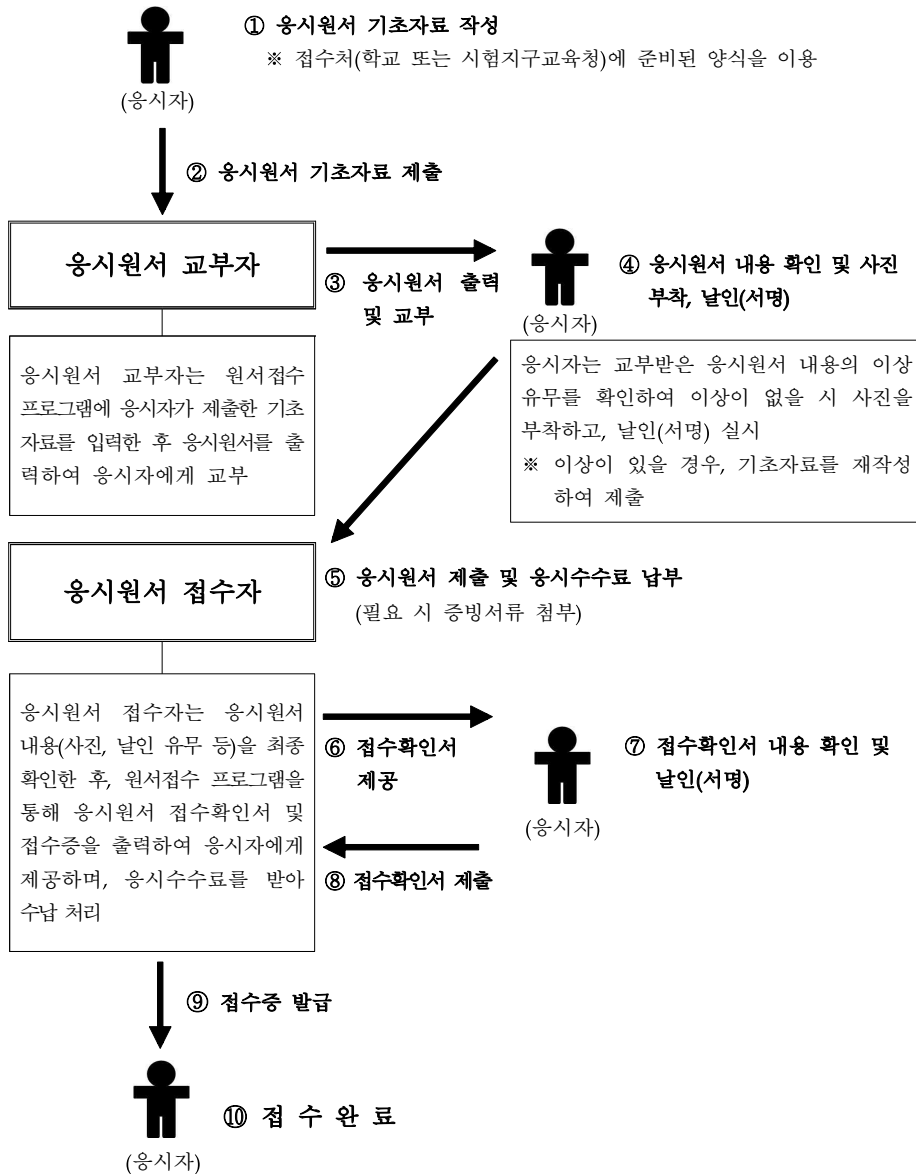
④ 응시원서 등 서류 보존기간

- 일반 수험생 : 최소 1년 보존 * 다음해 수능 대리응시자 확인 목적
- 시험편의제공대상자 : 5년 보존
 - ※ 안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」 참고

★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교부(수험생 신분증 필수 지참)

- 기간 : **2019. 11. 13. (수)**
- 시간 : 10:00 ~
- 장소 : 행정실

2020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주요 절차



2020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절차

□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

- 대상자: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

구분	요건
국민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대상자, 장애수당 대상자, 자활근로 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○ 신청방법

-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**재학생**: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
- ※ 학기 중 면제대상자 자격기준에 추가되는 학생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철저
- ※ 응시수수료 면제 업무 처리 시 원서접수 사용자 설명서(학교용) 47~51p 숙지
- 졸업생, 검정고시합격자,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: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

구분	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차상위계층 확인서	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19.7.22.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

□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

- 대상자: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등의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
- 신청방법: 환불신청 기간(19.11.18.~11.22.)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(접수처 비치), 신분증,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% 환불